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
----------	----

2014년 9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년 8월 26일, 박준희 의원
-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9월 10일
- 다. 상 정 일 자 : 제2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4년 9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준희 의원)

-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고령사  
회에 진입하고 있고, 핵가족 시대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홀로  
거주하시는 독거노인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서울시 독거노인은 총 238,551명  
에 이르고, 이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독거노인만  
해도 6만6천여명(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40,161명, 저소득

노인 26,067명)에 이르러 이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살핌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에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이 외로움과 병환으로 인해 사망하더라도 홀로 거주하기 때문에 시신이 수 개월 이후에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들에 대한 보호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시장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적 빈곤 및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홀로 사는 노인에게 대한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노후의 건강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음.
- 안 제18조의2에서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sup>1)</sup>에 따른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시장”에게 홀로 사는 노인에게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
  - 현재 서울시에는 ‘홀로 사는 노인’은 238,000여명(2012.12 기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1)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게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한편 서울시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 중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노인에 대해서는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sup>2)</sup>를 제공하고 있어, 본 조항의 신설로 서울시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가 더욱 확대되고 충실하게 시행 될 것으로 생각 됨.
- 다만 동 조례안은 시행 상 문제는 없으나 자칫 상위법의 내용을 그대로 원용한 측면이 있어, 향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관련 조례가 양산될 우려가 있고 법령에 명기된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옮김으로써 불필요한 조례 개정이 이어질 개연성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임.

---

2)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3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자

○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시 동행·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표〉 서울시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서비스 및 안전 확인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 (최종 5년간)

연 도	내 용	변화내용 및 특징	사업내용
2010	- 노인돌봄서비스, - 식사배달·밀반찬배달,	- 가사간병서비스 노인이용자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이관	-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2011	- 사랑의 안심폰,	- 서울시 독거어르신 전수 조사 실시	- 도시락, 밀반찬배달 - 모바일 원격 모니터링
2012	- 노인돌봄서비스, - 식사배달·밀반찬배달,	- 무료급식 지원단가 인상 (밀반찬배달: 3,000→ 3,500원)	-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2013	- 사랑의 안심폰,	- 어르신돌봄통합시스템 구축	- 도시락, 밀반찬배달 - 모바일 원격 모니터링
2014	- 주거환경개선	- 어르신돌봄통합시스템을 통한 중복수혜 관리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 단가 인상(9,500→9,800원)	- 점·소등리모컨, 싱크대 개조 지원

# <참고> 서울시 자치구별 홀로 사는 노인 현황

(2012.12말 기준, 단위: 명, %)

자치구명	노인인구수 (명)	홀로사는 노인 (명)			홀로 사는 노인 비율(%)
		계	남	여	
종로구	23,573	6,254	2,297	3,957	26.5%
중구	18,775	5,098	1,743	3,355	27.2%
용산구	32,502	7,934	2,355	5,579	24.4%
성동구	33,773	7,095	2,021	5,074	21.0%
광진구	35,162	7,259	2,178	5,081	20.6%
동대문구	46,163	9,806	3,230	6,576	21.2%
중랑구	45,843	10,588	3,107	7,481	23.1%
성북구	57,336	12,399	3,382	9,017	21.6%
강북구	45,561	10,163	2,910	7,253	22.3%
도봉구	41,695	6,672	1,730	4,942	16.0%
노원구	60,602	14,679	3,711	10,968	24.2%
은평구	59,791	12,716	3,686	9,030	21.3%
서대문구	41,028	8,800	2,280	6,520	21.4%
마포구	43,680	9,216	2,601	6,615	21.1%
양천구	42,956	8,861	7,123	1,738	20.6%
강서구	54,910	13,991	4,844	9,147	25.5%
구로구	43,932	13,246	11,107	2,139	30.2%
금천구	26,146	6,048	2,319	3,729	23.1%
영등포구	44,932	10,027	3,208	6,819	22.3%
동작구	46,335	8,975	2,983	5,992	19.4%
관악구	55,402	12,625	3,897	8,728	22.8%
서초구	41,194	7,246	2,080	5,166	17.6%
강남구	49,246	9,151	2,481	6,670	18.6%
송파구	57,997	10,927	4,048	6,879	18.8%
강동구	44,138	8,775	2,877	5,898	19.9%
계	1,092,672	238,551	84,198	154,353	21.8%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8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